

##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

### 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4084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3. 11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최재호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3. 2. 6.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5. 7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김숙희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조사된 내용없 음 주택임 차권자	2022.06.24.~	138,000,000		2022.06.24.	2022.06.14.		
주택도 시보증 공사	전부	권리신고	조사된 내용없 음 임차인	2022.06.24.~ 2023.06.13	138,000,000		2022.06.24.	2022.06.24.	2025.4.10.	
<b>&lt;비고&gt;</b>										
주택도시보증공사:신청채권자로 임차권자 김숙희의 승계인임. 25. 4. 10.자 배당요구신청서상 확정일자는 2022.06.24.로 제출하였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상 확정일자는 2022.06.14.임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<b>비고란</b>										
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. 3. 6.자에 '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, 전액을 변제받지 못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.'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## 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40842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247-33, 247-16

302동

나동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송화로 39-24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3층 공동주택

1층 225.31㎡

2층 217.14㎡

3층 217.14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3층304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47.57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247-33

대 1310㎡

2. 동 소 247-16

대 137㎡

대지권의종류 : 1, 2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, 2. 1,447분의 63.711

감정평가액 139,000,000
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----	-----	--------	---------

1회	2026.04.13	139,000,000	13,900,000
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

2회	2026.06.08	97,300,000	9,730,000
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

3회	2026.07.13	68,110,000	6,811,000
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

4회	2026.08.24	47,677,000	4,767,700
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

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. 3. 6.자에 '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,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.'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